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레저스포츠시설 안전기준 고시 〉
■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690호)

2024.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전완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레저스포츠시설 안전기준 고시	2
2.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4. 9. 5.
3. 회 부 일: 2024. 9.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등록·신고체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음.

최근 취미·오락·체험·교육 등을 위해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한 레저스포츠 인구가 증가하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레저스포츠시설은 현행법에 따른 등록·신고체육시설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여가 활용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9 신설).

Ⅲ. 검토의견

1. 레저스포츠시설 안전기준 고시

개정안은 레저스포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문체부장관이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조의9 신설).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9(체육시설 안전기준 마련) ①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 및 등록·신고체육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한 안전기준(이하 “체육시설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u>체육시설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이용자가 체육시설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u>

2. 검토의견

현행법상 체육시설업은 시설·안전기준 등 각종 규제를 받는 등록·신고업과 그렇지 않은 자유업으로 구분되는데¹⁾, 최근 오락성 신체 활동을 기반으로 한 레저스포츠시설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체육시설로서 통제를 받지 않음에 따라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문체부장관이 일정 체육시설에 대해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재 수중·수상·항공·산림에서의 레포츠시설 및 활동에 관해서는 안전관리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약 1,300여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제11조(시설 기준 등)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안전·위생 기준 등)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임무, 수질 관리,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제1항의 안전·위생 기준에 따른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제2항의 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있는 육상레저스포츠의 경우 고지대·고속력 등을 기반으로 하는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큼에도 안전관리 관련 규정이 미흡한 바²⁾,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기준을 마련할 경우 국민의 안전한 여가 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해 보임.

[표] 육상레저스포츠시설업 현황

(단위: 개소)

구분	하강시설 (썰라인)	반자점프	서바이벌	카트	산악 오토바이 (ATV)	산악 자전거 (MTB)	X-GAME (인라인 BMX)	계
공공	33	-	16	3	1	28	545	626
민간	55	9	216	61	214	13	113	681
합계	88	9	232	64	215	41	658	1,30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3년 레저스포츠산업 실태조사)

다만, 개정안은 적용대상을 ‘공공체육시설 및 등록·신고체육시설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운영·관리자’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레저스포츠시설 등을 의도하는 것인지 유추하기 어렵고 자유업에 해당하는 다른 체육시설업자들의 적용대상 여부가 모호하다는 점,

2)

[레저스포츠 관련 입법례]

스포츠 유형	법률	관련 규제
수중레저	「수중레저법」 제15조,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해수부장관에게 사업 등록, 사업자의 안전관리·종사자의 안전교육
수상레저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 「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칙」	해양경찰서장 등에게 사업 등록, 안전점검 및 기타 준수사항
항공레저스포츠	「항공사업법」 제50조, 「항공안전법」 제132조, 「항공레저스포츠 안전관리지침」	국토부장관에게 사업 등록 (사업계획서에 안전관리대책 포함), 항공안전활동 관련 서류 제출·안전점검
산림레포츠	「산림휴양법」 제12조·제20조, 「산림레포츠시설 설치·운영·관리규정」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산림청장),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계획의 시도지사 승인, 산림레포츠시설 안전관리 등

개정안은 체육시설 운영·관리자에게 안전기준 준수 의무만 부과하고 강제수단이 없어 실효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하강시설 등 레저스포츠시설이 현행법상 ‘체육시설’의 범주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스포츠안전재단의 의견과 ‘수상레저활동’ 등의 경우 타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를 참고할 때 레저스포츠시설의 성격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문체부는 항공·수상·수중·산림 레저스포츠가 개별법상 관리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육상레저스포츠도 개별법 제정을 통해 신고·등록업종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³⁾.

3) 현재 자유업인 레저스포츠시설에 대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시행 중(문체부)

- 2016년부터 민간 레저스포츠시설 중 시설 안전점검 신청을 받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와 사업장에 통보·공유

[2023년도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안전점검 현황]

(단위: 개소)

번지점프	하강시설 (썰라인)	산악오토바이 (ATV)	소형경주자동차 (KART)	서바이벌	산악자전거 (MTB)	X-GAME (인라인, BMX등)	계
2	20	34	20	39	2	33	150

*점검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23년 435백만원(국고), 시설물안전연구원 위탁 수행)

- 사업주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안전교육 실시

- 2023년 교육인원 총 904명으로 전년 763명 대비 141명 증가(18.5%↑)

[2023년도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안전교육 현황]

(단위: 명)

구분	집합교육	방문교육	온라인교육	계
사업자	-	177	196	373
이용자	318	12	164	494
공무원	25	5	7	37
총인원	343	194	367	904

문 의 처

02)6788-5375

[참고 1] 레저스포츠시설업 관련 제정안 발의 현황

회기	의안 번호	법률안(의원명)	심사 경과
19대	1900357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선교의원 등 11인) ▪ (제정이유) 「항공법」, 「수상레저안전법」, 「건축법」 등 각기 다른 법률 적용에 따라 레저스포츠의 통합적 발전 저해와 이용자 혼란 초래 ▪ (주요내용) ▲레저스포츠의 진흥과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문체부 장관이 총괄, ▲지자체 업종 신고, ▲안전관리 기준 마련·안전검사의무 부여 등 ▪ (주요쟁점) 부처간 이권 조정(육상,수상,항공레저)	12. 6.27. 제안 13. 4.10. 상정 14.12. 4. 철회
	1911346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한선교의원 등 11인) ▪ (제정이유) 법률안 1900357과 동일 ▪ (주요내용) 법률안 1900357과 동일 ▪ (주요쟁점) 부처간 이권 조정(육상,수상,항공레저)	14. 8 .7. 제안 14.12. 3. 상정 14.12. 4. 소위 상정 15.11.26. 소위 상정 15.12. 2. 소위 상정 16. 5.29. 임기만료폐기
20대	2002940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한선교의원 등 10인) ▪ (제정이유) 법률안 1900357과 동일 ▪ (주요내용) 법률안 1900357 내용에 ▲사고발생시 즉시 사용중지, ▲지자체 자료제출 요구 등 관리감독 권한 명시 등 추가 ▪ (주요쟁점) 부처간 이권 조정(육상,수상,항공레저)	16.10.26. 제안 17. 9.19. 상정 19.11.18. 상정/소위원회 20. 5.29. 임기만료폐기
21대	2113832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병훈의원 등 12인) ▪ (제정이유) 육상레저스포츠의 체계적 관리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제정내용) ▲육상레저스포츠 정의 신설, ▲진흥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진흥 및 안전관리 사업 추진, ▲시설의 안전성검사, ▲안전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주요쟁점)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정의 및 적용범위 (체육시설, 관광·유원시설)	21.12. 9. 제안 22. 3.29. 상정/소위원회 24. 5.29. 임기만료폐기
	2118123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정이유) 레저스포츠의 체계적 통합 관리·조정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제정내용) ▲레저스포츠를 육상, 수상, 항공으로 구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시설의 안전검사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예산 지원, ▲단체 등 지원, ▲국제교류 지원 등 ▪ (주요쟁점) 부처간 이권 조정(육상,수상,항공레저)	22.11. 4. 제안 23. 2. 9. 상정/소위원회 24. 5.29. 임기만료폐기